

K O R E A E X C H A N G E

#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

# 목차

K O R E A   E X C H A N G E

1. ESG공시개요
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(EU, 미국, ISSB)
3. 시사점

K O R E A   E X C H A N G E

# 1. ESG공시개요

# 1. ESG 공시 개요

-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, 투자, 평가 전반의 시장 형성 및 제도화 움직임이 진행 중
- ESG 공시는 ESG 평가 및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ESG 금융의 필수 요소
  - 공시-평가-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



# 1. ESG 공시 개요

## I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

- ESG 공시는 2000년대 이후 비재무정보의 공개 표준이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
- 강제성 없는 자율적 지침으로, 기업들은 GRI, TCFD, SASB 등 다양한 기준을 선택하여 활용

### 【 ESG관련 대표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】



(출처: 한국상장회사협의회 「ESG ATOZ」, 2021)

# 1. ESG 공시 개요

## I 최근 ESG 공시 동향

### 🌐 국가 및 지역별 ESG 공시 제도화 움직임

- 🌐 유럽 및 미국 등에서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중
- 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계획



### 🌐 IFRS재단 산하 ISSB 설립

- 🌐 IASB\*와 별도로 단일의 글로벌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 목적

\*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(국제회계기준위원회)



K O R E A   E X C H A N G E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- 1) EU
- 2) 미국(SEC)
- 3) ISSB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EU

- NFRD, CSRD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(ESRS)를 마련하여 제시
- EU 지침(Directive)으로, 각 EU 회원국들은 EU 지침을 반영하여 국내법 마련 필요

#### 〈EU의 ESG 관련 주요 제도 개요〉

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EU

#### NFRD

- Non-Financial Reporting Directive
  - EU 회원국 기업들의 ESG 정보 비교 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정 ('14.10월)
  -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기업\*을 대상으로 '1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
- \* 근로자수 500인 이상 & 자산총액 2천만유로 이상 등의 상장기업 및 은행·보험사 등

#### CSRD

-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
- 기존 NFRD\*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 성격의 공시지침 제정('22.11월)
- \* 통일된 공시기준 부재(자율선택), CoE(Comply or Explain) 방식 등 다소 완화적
- 보고대상 기업은 EU 상장·비상장 대기업 및 일부 외국기업
- 부속규범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(ESRS) 도입 예정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EU

#### ESRS

-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

- EC로부터 위임 받은 '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(EFRAG)'이 CSRD가 규정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을 구체화한 '지속가능성 공시기준(ESRS)' 초안을 발표('22.5월)
- 현재까지 발표된 ESRS 기준은 **공통기준(2개)** 및 **주제별 산업무관 공시기준(10개)**을 제시

#### 포괄적 공시기준

ESRS1 (일반요구사항)

ESRS2 (일반공시사항)

#### 주제별 산업무관 공시기준

환경

기후변화, 오염, 물·해양자원, 생물다양성·생태계, 자원사용·순환경제

사회

기업의 노동자, 밸류체인 내 노동자, 지역사회, 소비자·최종사용자

거버넌스

비즈니스 수행

- '23.6월까지 최종 공시기준 확정 예정이며, 산업별 공시기준은 개발 중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EU

🕒 '25년부터('24회계연도) 단계적으로 CSRD 지침 준수 필요

🕒 단, EU회원국들은 CSRD에 따라 별도 국내법을 마련할 예정으로 국가별 공시대상 및 시기 등은 CSRD 지침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

#### 【 EU CSRD 공시 대상회사 및 시기 】

구분	대상회사	의무공시시기
1	NFRD 요건 해당 기업 (일정규모(大大)* 이상의 EU 상장기업)	FY24 ( '25년 공시)
2	EU 소재 대기업 (일정규모(大)** 이상의 EU 상장·비상장기업)	FY25 ( '26년 공시)
3	EU 소재 중소기업 (일정규모(中小) 이상의 EU 상장·비상장기업)	FY26 ( '27년 공시)
4	EU 매출액이 최근 2년 동안 연간 1억5천만유로 이상인 非EU기업, EU에 일정규모 이상의 종속기업이나 지점을 보유한 非EU기업	FY28 ( '29년 공시)

\* ①근로자수 500인 이상이고, ②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

\*\* ①근로자수 250인 이상, ②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, ③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 충족 기업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미국(SEC)

- 美 SEC(증권거래위원회)는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('22.3월)
  - '24년부터('23 회계연도)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의무 적용 계획
  - 기존에도 공시의무('09년 환경, '20년 사회·지배구조)는 있었으나, 공시대상 정보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겨 실효성은 낮았음
    - 기후 관련하여, 「기후변화리스크 공시 가이드스('10년)」도 있었으나, 강제성은 없었음
-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(Regulation S-K\*)을 통해 상장기업에 법정공시 의무를 부여

\* 증권법(1933) 및 증권거래법(1934) 등을 근거로 한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SEC 규정

※ SEC는 1933년 증권법(발행시장 공시의무 규율) 및 1934년 증권거래법(유통시장 공시의무 규율) 상의 공시사항을 통합하여, 재무제표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-X, 비재무정보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-K를 통해 규율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미국(SEC)

#### SEC 기후공시 초안 주요내용

- TCFD 및 GHG 프로토콜에 따라 Regulation S-K 하위 항목을 신설, 기후공시 사항 명시
  - 공시대상은 모든 상장기업(미국에 상장된 해외기업 포함)
  - 온실가스배출량(Scope 1·2·3) 공시시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, Scope3에 대해서는 면책조항 도입
  - Scope 1·2 공시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, '24년 제한적 검증부터 적용 후 '26년부터 합리적 검증으로 강화
  - 제3자 검증인 또는 검증기관의 자격요건\*을 규정

\* ① 법적 요건을 이행하고,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측정, 분석, 보고 및 검증 관련 풍부한 경험(전문성)이 있을 것 ② 기관인 경우 합리적 검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③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미국(SEC)

#### SEC 기후공시 초안 주요내용

##### 【 SEC 기후공시 관련 Regulation S-K 주요 신설조항 】

Item No.	주요내용
1501	기후 관련 거버넌스 공시
1502	사업 및 일반적인 환경 관점에서 기후 관련 활동 영향 공시 - 사업 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는 단·중·장기 위험 또는 기회 - 물리적·전환 위험이 전략, 사업모델이 미치는 영향 등
1503	기후 관련 위험 식별·평가·관리 절차 포함 위험관리 전략 공시
1504	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공시(Scope 1·2·3)
1505	Scope 1 및 Scope2 배출 공시 검증 - 전문기관에 의한 검증 보고서 제출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미국(SEC)

🕒 '24년부터('23회계연도)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 의무 단계적으로 적용

【 SEC 단계적 공시의무 적용 일정 】

	대상회사	FY23 ( '24년 공시 )	FY24 ( '25년 공시 )	FY25 ( '26년 공시 )	FY26 ( '27년 공시 )	FY27 ( '28년 공시 )
1	Large Accelerated Filer (유동주식 시총 7억달러 이상)	Scope 1&2	+제한적검증		+합리적검증	
			Scope 3			
2	Accelerated Filer (시총 0.75억~7억 달러 & 매출 1억 달러 이상)		Scope 1&2	+제한적검증		+합리적검증
				Scope 3		
3	Non-Accelerated Filer (시총 0.75달러 미만 또는 시총 0.75~7억 & 매출 1억 달러 미만)		Scope 1&2			
				Scope 3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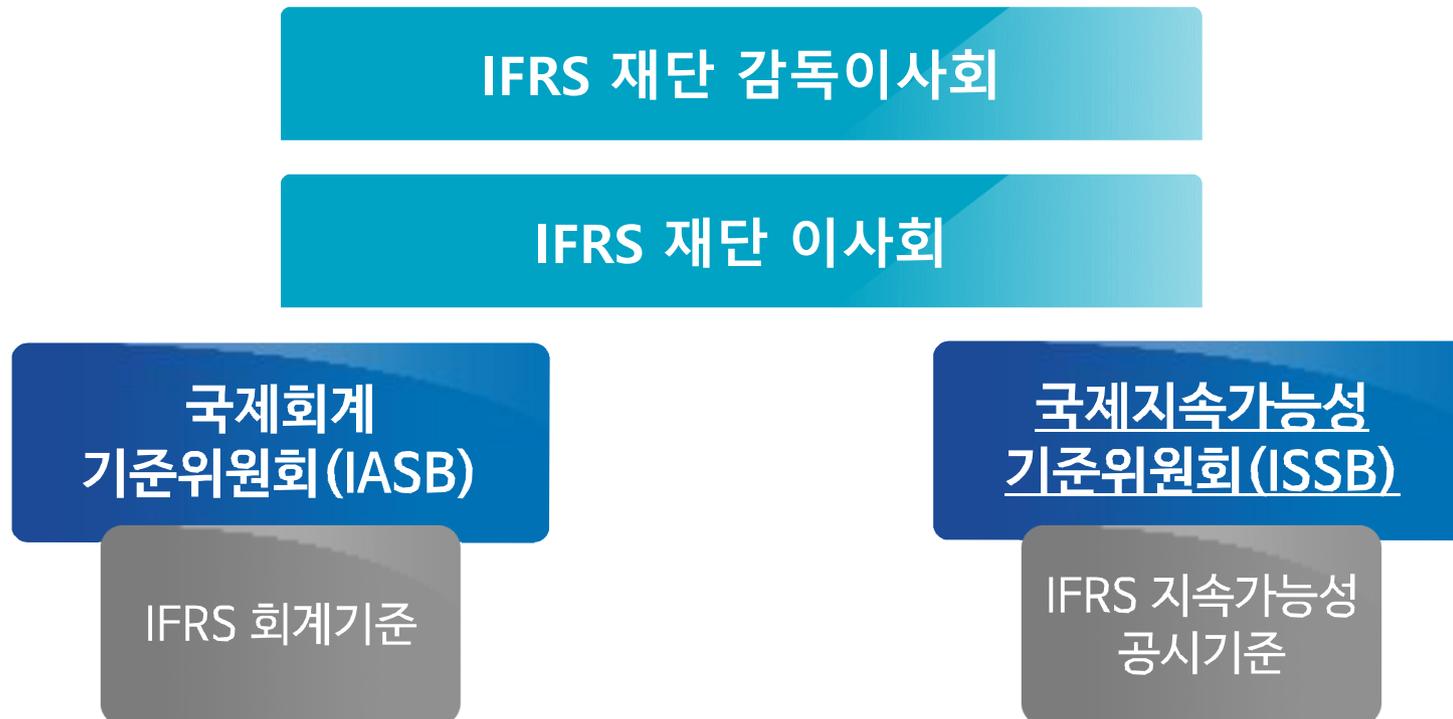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ISSB(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)

- IFRS 재단은 국제표준으로 활용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및 관리를 위해 ISSB를 설립('21.11월)
-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기구인 CDSB\* 및 VRF\*\*와의 합병을 통해 각 기구의 핵심역량을 활용

\*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: 기후 및 환경 공시체계 마련 기구

\*\* Value Reporting Foundation : IIRC(ESG 정보와 재무성과의 통합공개 추구)와 SASB(산업별 ESG 공개지표 제시)의 통합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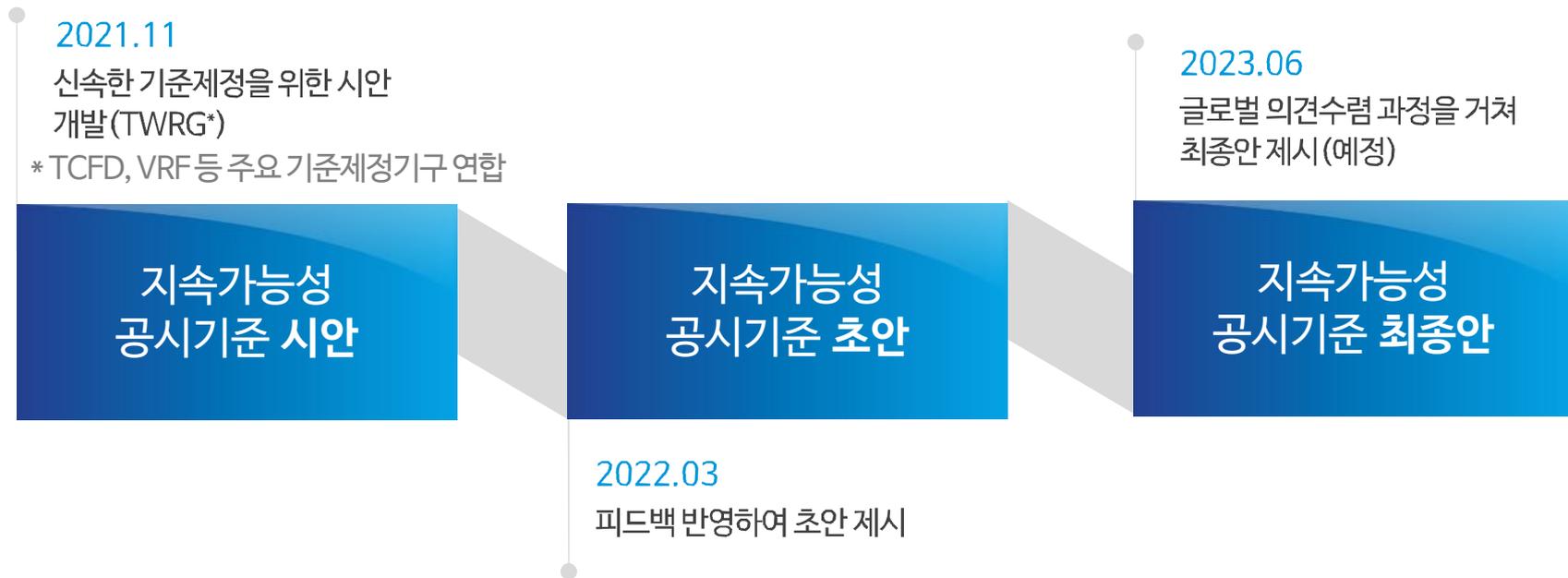
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ISSB(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)

#### ISSB는 '23.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제시 예정('24년 이후 시행)

도입여부 및 적용 시점은 각 국가에서 결정



IOSCO(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), FSB(금융안정위원회), WEF(세계경제포럼), G20 등의 지지

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선(baseline)으로서 역할 기대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ISSB(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)

-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중에서도 주로 투자자 의사결정 및 기업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심
- ISSB는 지속가능성 기준제정 관련 4가지 전략방향을 제시

전략방향	세부 내용
투자자 중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중이해관계자 보다 투자자중심* 정보 제공</li> <li>* 재무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슈 중심</li> </ul>
환경.기후에 우선 집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 및 기후 이슈에 우선 집중</li> <li>* 앞으로 생물다양성, 인권 등 세부주제 확대 계획</li> </ul>
Global baseline 접근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ISSB 공시기준을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안</li> <li>* 각 국가별 법령 및 규제에 따라 공시사항 추가 가능</li> </ul>
기존 표준과의 연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 관련 사항은 TCFD 권고사항을 기본으로 개발</li> <li>○ IIRC와 SASB 통합(VRF), GRI와도 긴밀히 협력</li> </ul>

## 2.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

### I ISSB(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)

#### ● 일반 요구사항(S1)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(S2)으로 구성

##### ○ 일반 요구사항은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“핵심 공시항목” 및 “일반 요구사항”을 제시

- (핵심 공시항목) 지배구조, 전략, 위험관리, 지표 및 목표
- (일반 요구사항) 보고기업, 보고빈도 등 공시이행 관련 준수사항

##### ○ 기후관련 공시기준은 기업이 노출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

- (공시항목) 기후 관련 지배구조, 전략, 위험관리, 지표 및 목표(산업전반 공시지표)
- (부록B) 산업기반 공시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. 대부분 SASB기준을 차용

#### ● 생물다양성, 인적자본, 인권 등 후속 기준의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

K O R E A   E X C H A N G E

# 3. 시사점

# 3. 시사점

## I ESG공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

- 유럽과 미국의 공시규제 강화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기업에 영향
  - (EU) 국내 기업이 EU에 상장되었거나, EU 내 일정규모 이상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경우, EU 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국내기업이라도 단계적으로 EU 공시규제 준수 필요
  - (미국) 국내 기업이 미국에 상장된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SEC 기후공시 의무 부담
  - 공시규제의 대상이 종속기업 및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Scope3 등은 공급·판매망에 속한 국내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
-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 뿐만 아니라,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국제 기준 제정 동향을 파악하고 공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

## I 기업지원 필요성

- 국내기업 대부분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 ESG 대응에 외부기관 컨설팅 사용
-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, 글로벌 공시기준의 국문 번역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
- ESG 공시 컨설팅에 대한 지원 및 작성지침·모범사례 등 제공 필요

# 3. 시사점

## I 기후 관련 공시의 중요성 증대

- SEC에 이어 ISSB도 기후공시 관련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함에 따라, ESG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
  -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, 그 외 환경 및 사회 분야로 확대

## I 국내 공시기준 마련 필요성

- 현재는 지배구조보고서는 의무화하고, 기타 환경·사회를 포함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공시
  - 현재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시 GRI, SASB, TCFD 등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을 자율적으로 활용
-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('25년~)한 바 있으며, 회계기준원 내에 KSSB(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)를 설립('23.1월)하여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
  -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국내 경제·산업 여건 및 기업 규모별 공시역량 등 기업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ESG 공시기준을 도입할 필요

# 감사합니다

K O R E A E X C H A N G E

